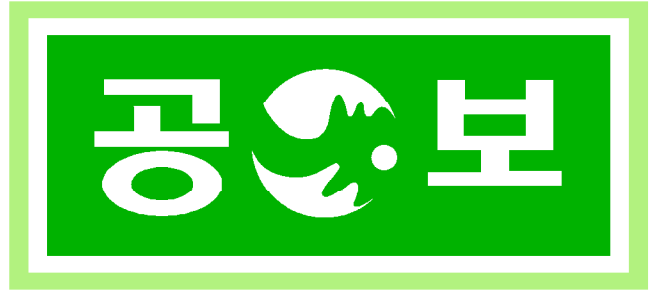


울산광역시북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공 보	기 관 의 장



제 938 호 2015. 3. 23. (월)

고 시
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5-45호[도로명주소 폐지 고시] 2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5-46호[도로명주소 고시] 4

공 고

-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5-284호[울산광역시 북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] 6

안 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북구 전자공보는 매주 월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전주 금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☞ 북구 홈페이지(www.bukgu.ulsan.kr)→행정정보→알림마당→북구공보
----------------	---

회 람							
--------------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: 울산광역시북구 편집: 기획홍보실(☎241-7126 행정7126)

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5 - 45호

도로명주소 폐지 고시

우리구 건물의 멸실 등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5년 3월 23일

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 : 울산광역시 복구 명촌1길 7-11(진장동)외 6건

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폐지일	폐지 사유
(별지참조)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복구 민원지적과 (☎052-241-7585)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복구청 홈페이지(www.bukgu.go.kr)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**2015. 3. 23.**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급변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,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.

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

연번	도로명주소	종전주소	도로명주소 폐지일	폐지사유	비고
1	울산광역시 북구 명촌1길 7-11(진장동)	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촌지구 70B 7L	2015-03-23	건축물 멸실	
2	울산광역시 북구 명촌7길 19(명촌동)	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촌지구 120B 1L	2015-03-23	건축물 멸실	
3	울산광역시 북구 명촌1길 8(진장동)	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촌지구 69B 6L	2015-03-23	건축물 멸실	
4	울산광역시 북구 명촌21길 4-7(진장동)	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촌지구 66B 10L	2015-03-23	건축물 멸실	
5	울산광역시 북구 명촌로 2(진장동)	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촌지구 63B 6L	2015-03-23	건축물 멸실	
6	울산광역시 북구 연암2길 8(연암동)	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312-4	2015-03-23	건축물 멸실	
7	울산광역시 북구 신기1길 10(매곡동)	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593	2015-03-23	건축물 멸실	

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5 - 46호

도로명주소 고시

우리구 관내 건물에 대하여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5년 3월 23일

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 : 울산광역시 복구 명촌1길 7-11(진장동)외 8건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 고시일	도로명 부여사유
(별지참조)	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복구 민원지적과 (☎052-241-7585)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복구청 홈페이지(www.bukgu.go.kr)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 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15. 3. 23.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

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

순번	중점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고시일	도로명부여사유	도로명 고시일	비고
1	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촌지구 70B 7L	울산광역시 북구 명촌1길 7-11(진장동)	2015-03-23	옛지명이며현재도 사용하는 명칭이므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04-12-27	
2	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촌지구 80B 3L	울산광역시 북구 명촌24길 11(진장동)	2015-03-23	옛지명이며현재도 사용하는 명칭이므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04-12-27	
3	울산광역시 북구 중산지구 14B 3L	울산광역시 북구 중산5길 19-6(중산동)	2015-03-23	법정동명상 사용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	2013-12-30	
4	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503-1, 776-2L, 23	울산광역시 북구 오사골2길 25(양정동)	2015-03-23	사각장이었던 곳으로 오지는 가차와 평이 높지 않따기 때문에 미하도로명으로 명을 부여하였다.	2004-01-05	지면추가
5	울산광역시 북구 담천동 375-7	울산광역시 북구 담천마을안길 11(담천동)	2015-03-23	마을중앙에 위치한 길이라는 지역특성에 따라 주민간의 편의에 의해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08-02-29	
6	울산광역시 북구 창평동 250-2	울산광역시 북구 차월3길 117-21(창평동)	2015-03-23	기존 차면마을인 차월마을에 위치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08-08-09	
7	울산광역시 북구 호수지구 7B 9L	울산광역시 북구 수동4길 14-9(호계동)	2015-03-23	수동마을 명칭 상용하여 도로명부여하였다	2013-12-30	
8	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312-4	울산광역시 북구 연암2길 8(연암동)	2015-03-23	고려중원대묘곳 바위에 서서 스리운 흰 연꽃이 수놓은 듯 피어나 백연암이라 이름 붙여졌다가 연암으로 불리던 것을 현재도 법정동 명으로 사용되니 이를 도로명 상용을 부여하였다.	2004-01-05	
9	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촌지구 77B 4-1L	울산광역시 북구 명촌4길 29-1(진장동)	2015-03-23	옛지명이며 현재도 사용하는 명칭이므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04-12-27	

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 2015- 284호

울산광역시 복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「울산광역시 복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5년 3월 23일

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1. 개정이유

- 「지방재정법」 일부 개정(14. 11. 29. 시행)에 따라 「울산광역시 복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」에 적용되는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「지방재정법」상 회계관계공무원 명칭 변경사항 반영
(안 제6조)
 - 경리관 → 재무관
 - 분임경리관 → 분임재무관
 - 경리업무담당주사 → 재무업무담당주사

3. 근거법규

- 「지방재정법」 제67조 • 제68조 • 제69조 • 제75조 • 제91조
- 울산광역시 복구 재무회계규칙 제3조제1항1호

4. 개정조례안 및 신·구조문 대비표 : 따로 붙임**5. 의견제출**

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30일 18: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(참조 : 도시행정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주소, 성명(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라. 제출처

- 주소 :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,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행정과

- 전화번호 : 052-241-7902, 팩스번호 : 052-241-7909

6. 기타사항

「울산광역시 북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일부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,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

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

울산광역시 복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 복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 제3호 중 “경리관”을 “재무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분임경리관”을 “분임재무관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호 중 “경리업무담당 주사”를 “재무업무담당주사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6조(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)	제6조(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)			
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의	효율적인 운용·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와			
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.				
1. 징 수 관 : 건설도시국장				
2. 분임징수관 : 도시행정과장				
3. 경 리 관 : 행정지원국장	3. 재무관			
4. 분임경리관 : 총무과장	4. 분임재무관			
5. 지 출 원 : 경리업무담당주사	5.-----재무-----			
6. 수입금출납원 : 도시개발업무담당주사	-----			

입 법 예 고 사 항 에 대 한 의 건 서

조례명 :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연 락 처 :

조례안 내용	찬성여부		의 건	비 고
	찬성	반대		